

대학생을 위한 건강보험료 절약

tip

건강보험 추가증 제도

대학 진학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세대를 구성하면
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시면 보험료가 부모세대에 합하여 고지되어
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
신청대상자

- 19세 미만인 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하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된 자
-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하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된 자
- 미혼인 예술체육요원, 국제협력봉사요원

신청절차

- 콜센터(1577-1000) 혹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인정여부를 확인
- 콜센터 혹은 지사에서 안내 받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(내방 혹은 팩스)
- 인정 및 제외 시기
 - 인정시기 : 추가증 신청한 날
 - 해제시기 : 추가증 사유 종료일의 다음날

구비서류

- 재학(재원)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예술체육요원, 국제협력봉사요원인 경우 복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(복무기관장 발급)
- 그 외 기타 구비서류는 콜센터(1577-1000)로 문의

결격사유

- 신청인 본인과 보호자가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, 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, 평생교육원, 전산원 재학생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.